2023년 인화동 종합감사 결과 보고

Ⅰ 감사개요

○ 감 사 기 간 : 2023. 2. 7. ~ 2. 9. (3일간)

○ 감 사 범 위 : 2020. 5. 1. ~ 2022. 12. 31.

○ 감 사 반 : 감사계장 등 4명

○ 감 사 중 점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주민자치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Ⅱ 지적사항

일련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11건	시정 4 주의 7	회수 1	주의 2 훈계 2
1	보안 업무 소홀	시정		주의
2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주의		훈계
3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OOO	
4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5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주의		
7	청소년증 대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주의		훈계
8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보관 부적정	주의		
9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주의
10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 처리 소홀	주의		
11	주민등록초본 발급 업무 소홀	주의		

Ⅲ 지적사항 요약

1. 보안 업무 소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 및 제4항에는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문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시행규칙 제70조(비밀 관리부철의 보존)의 규정에 따르면 비밀열람기록전(철)은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인화동에서는 Ⅲ급 비밀문서를 파기하고 5년 이상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비밀열람기록전 □□건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47조의2(예산의이용·이체)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물품의 운송대, 소모성 물품 구입, 기계, 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등을 집행 할 수 있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등의 경우 집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인화동에서는 '◆◆ 구입에 따른 ○○○ 지급' 등 ■건에 대해 사무관리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3.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부적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임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제로 하며,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인화동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임금을 매월 지급하였어야 하나, **◆ ~ ◇개월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 없이 계약 종료시 임금 일괄 지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을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지급하며, **통·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통장이 임명 또는 사임한 경우 해당 월 통장수당을 **일할 계산 방식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인화동에서는한달을 다 채우지 못한 통장에게 한달분 통장수당을 지급하여 총 0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강사)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같은 조례 제13조(수당)에 따르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5조(시행규칙 등)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수당)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지급**한다고 되어있음.

▸ 그러나 인화동에서는 **인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 등에 강사수당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강사수당을 전부터 전해오던 전례대로 ◐◐◐,◑◐◐원 고정 지급**하였으며,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에도 수당 관련된 내용 언급이 없이 구두상으로 약정**하는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장기 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고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 또는 연 1회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화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 등의 사유로 급여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미지정**하고 있으며, 2022. 5월 급여관리자 지정없이 본인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는 대상자에 대해 **급여수급자 스스로 금전 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함에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 급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청소년증 대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 신청자가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엄격히 발급하여야 하고, **본인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 받아 대리인 신분과 해당 청소년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 시스템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

▸ 그러나 인화동에서는 **청소년증을 발급하면서 대리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신청을 받아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보관 부적정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매뉴얼」에 따르면 제3자[납세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소지한 자]가 '개인'의 지방세 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지방세 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사본가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화동에서는 **지방세 제증명 위임 신청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미제출하였음에도 보완요청 없이 발급하였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를 누락하고 지정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서류가 미비함에도 별다른 보완없이 발급한 사실**이 있음.

9.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 소홀

○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의 변경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첩부)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민원 접수처리 즉시 수입증지를 첩부하여 증지 수입금의 누락없이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제2항에 따르면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화동에서는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도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지연하여 첩부함으로써 당일 수입금에 누락된 채 세입처리된 사실**이 있었으며, 신청인의 개명으로 인하여 인감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하나 **부적정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신청인의 개명전 성명으로 작성하는 등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증명 위임발급 신청 시 위임자는 위임했다는 표시로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은 원본임과 동시에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위임장은 인감사고 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문서감정의 대상이 될 때가 많으므로, 대리인에게 위임자 본인의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등 주요한 흠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위임장을 보완토록 하여하나, 인화동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면서 **위임일자, 용도, 위임사유 등 필수 기재사항 미작성 및 위임일이 도래하지 않은 위임장에 대해 응당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11. 주민등록초본 발급 업무처리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소송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위임장, 주소보정명령서, 등·초본 교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할 경우 피고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한 후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한 사람란의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현주소)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인화동에서는 소송 관련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항목은 생략 후 교부·열람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신청한 등·초본교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하지 않았고, 소송 등 관련하여 법원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등·초본 교부 시 서면위임장,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제출받아 등·초본교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함에도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받았으며, 주민등록등·초본 위임 발급 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위임자 신분증(사본)을 미첨부하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된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초본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